

# 특별지원금에 관한 지침

제정 2023. 7. 3

개정 2024. 1. 3

개정 2024. 6. 1

개정 2026. 3. 1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교원 연봉제 운영규정 제21조의4에 근거하여 특별지원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“특별지원금”이란 초기 정착비, 부임경비, 주거안정수당과 별개로 학문적 탁월성을 통해 대학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신입 전임교원 및 기 재직중인 전임교원에게 특별히 지급되는 금원을 말한다. (개정: 2024.1.3.) (개정: 2024.6.1.)
2. (삭제: 2024.1.3.)
3. 제3조의 2에 “전임교원에 준하는 해외 석학급 저명학자”란 비전임교원으로서 포스텍에서 학생 연구지도와 강의를 수행하는 해외 석학교원을 말한다.(신설: 2024.6.1.)

제3조(지급대상) 특별지원금의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으며,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(개정: 2024.1.3.) (개정: 2024.6.1.)(개정: 2026.3.1.)

1. 대학의 중점연구분야 혹은 새로운 학문분야 개척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초빙하는 탁월한 신입 전임교원 (신설: 2024.6.1.)
2. 학문적 우수성을 통해 대학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기 재직중인 탁월한 전임교원 (신설: 2024.6.1.)

제3조의2(지급대상의 특례) 특별지원금의 지급대상은 원칙적으로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하나, 전임교원에 준하는 해외 석학급 저명학자로서 대학의 국제적 위상제고를 위하여 임용하는 비전임교원은 예외적으로 특별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.(신설: 2024.6.1.)

제4조(지급액 및 지급기간) 특별지원금의 지급액 및 지급기간은 자격, 전공분야, 경력 및 정착지원·가족생활 안정지원 필요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. (개정: 2026.3.1.)

제5조(지급방법) 특별지원금은 급여 지급시 포함하거나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.

제6조(보칙) 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 제규정을 준용한다.

이 지침은 2023년 7월 3일부로 제정, 시행하며, 제정 전 이행된 사항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.

#### 부 칙

이 지침은 2024년 1월 3일부로 개정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이 지침은 2024년 6월 1일부로 개정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이 지침은 2026년 3월 1일부로 개정 시행한다.